

# 보복범죄 관련 법제연구

## Legal System Research Relating to Retaliatory Crime

강맹진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Maeng-Jin Kang(police@nambu.ac.kr)

### 요약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보복범죄 | 형사사법활동 | 피해자 | 증인보호 | 사전적 개입 |

### Abstract

Social unrest from retaliatory crimes is increasingly becoming problematic. Recently, there was an accident involving a suspect who went to a hospital and committed acts of retaliatory violence 11 times. This person's reasoning was that he was imprisoned due to the hospital's reporting to the police. He was consequently arrested in Boeun Choongbook on December 27th 2014.

Accidents like this one take place frequently around our surroundings. There are regulations and systems in place. Nevertheless, similar cases that continue to take place makes us wonder if criminal judicial systems work well.

Lukewarm responses to retaliatory crimes is not only threatening social security, but also placing fears in the minds of ordinary citizens. If retaliatory crimes take place, most citizens become apprehensive about criminal judicial activities of the police and mistrust for criminal judicial system. This at times discourages people from reporting incidents and could eventually increase crime rate and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Even though there are legal and systemic control measures, retaliatory crime is an increasing trend. This study is going to examine tendencies of internal retaliatory crimes and discuss legal-systemical responses.

■ keyword : | Retaliatory Crime | Criminal Judicial Activities | Victim | Witness Protection | Previous Intervention |

접수일자 : 2014년 11월 12일  
수정일자 : 2014년 12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9일  
교신저자 : 강맹진, e-mail : police@nambu.ac.kr

## I. 서론

최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 신고자나 증인 등을 보호하여 보복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회정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또한 최근 「동네조폭검거 100일 작전」을 마친 경찰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되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들로 인한 보복범죄를 염려하는 염려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에게도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복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관용이 지나치게 되면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게 되고 국민들은 범죄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된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나 보복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비교적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관련 정책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보복범죄의 정의

Phyllis B. Gerstenfeld는 그의 저서 「중요 범죄: 원인, 통제 그리고 논란」에서 “보복범죄는 사람이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중요 사건의 보도나 소문을 듣고 소위 처음 문제를 만든 그룹의 구성원에게 범죄를 저질러 복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 보복범죄에 대한 견해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범죄관계인 또는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신고, 증언, 진술 등에 대한 앙갚음을 목적으로 그들이나 가족 등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범죄유형

보복범죄 유형을 구분하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2.1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성폭력 등 범죄의 피해를 직접 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미 어떤 특정범죄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차 범행을 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보복범죄의 가해자는 이미 일으켰던 범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제법의 가능성이 크다.

#### 2.2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직접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법정에서 진술을 한 사람, 범정이 아니더라도 지인 등에게 관련 사실을 언급한 사람, 특정한 내용을 전달한 사람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히 보복범죄의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편적이다.

### 3. 범죄효과

보복범죄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을 야기한다. 보복범죄가 빈발하게 되면 일단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이러한 불신은 국가사회를 불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민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보복범죄의 발생은 다른 유사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상해를 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며 타인을 때리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포함한다[2].

특히 범죄의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피해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준다.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범죄사건을 얘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두려움의 정도는 더 강해진다[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197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4]. 범죄로 인한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범죄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 범죄에 대한 위협이 한층 높아진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5]. 그런데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보복범죄로 인한 두려움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교정을 망라하여 형사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결국 시민들은 신고나 고발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을 꺼리게 되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4. 범죄동향

법무부가 2014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복범죄 발생율은 전국적으로 2009년 160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고자의 신변노출방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조서의 작성률이 2013년의 경우 대상범죄건수 대비 5.23%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6].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접수된 전체 보복범죄는 1,163건이다. 그런데 이것은 접수현황일 뿐이고 실제 발생사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으로 잡힌 통계이외에도 상당수의 암수범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복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부분 지인이거나 안면이 있는 경우, 보복이 두려운 이유 등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한편, 2014년의 보복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현재 전국에서 284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수치는 2011년 전체의 162건을 넘고 있고 2012년 전체인 321건을 육박하는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다섯 곳의 지방검찰청이 있고 각 지방검찰청마다 인구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보복범죄 다발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대구지방검찰청이 2011년 28건, 2012년 38건, 2013년 32건, 2014년 9월 현재 26건으로 가장 높은 124건을 나타내고 있다.

### III. 문제점

법제적 문제점으로는 크게, 증인보호 미흡과 미흡한 처벌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미흡한 처벌과 관련한 양형과정에서의 온정주의 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1. 증인보호 미흡

증인은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증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는 가장 유력한 증인이며, 보복범죄로부터 범죄피해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곧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이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 적어도 보복범죄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고소하거나 피해를 신고하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적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의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범죄사실의 확정과 양형을 정하는데 필요한 진술을 하는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8].

#### 2. 미흡한 처벌

보복범죄와 관련된 신변보호요청과 자유형 선고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토마토뉴스에 따르면[9], 최근 4년간 대구에서 보복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대구지방법원은 절반 이상을 집행유예로 판결하는 등 보복범죄에 대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10].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복범죄 접수현황'에 따르면, 보복범죄가 증가하면서 신변보호 요청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85건이었던 신변보호 요청은 2012년 102건, 2013년 148건, 2014년 상반기에만 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신변보호 요청 418건 중 171건(40.9%) 특히 증인에 대한 신변요청은 전체

172건 중 148건(86%)이 대구지방법원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대구지법의 보복범죄 위반 사건 자유형 선고비율을 보면 2011년 55.5%, 2012년 41.6%, 2013년 40.7%, 2014년 6월까지 25%로 평균 42% 수준이다. 자유형 선고비율은 전국 평균 52.7%보다도 10%나 낮은 수치이다.

## IV. 법제연구

### 1. 외국

여기에서는 영미법계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대륙법계인 독일의 관련 법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외국의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는 증인보호와 강력한 처벌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 1.1 미국

미국은 넓은 대륙만큼이나 주별로 다양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법제는 동일하지만 주정부차원의 법제는 각주의 특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50개 의주를 전체를 논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1970년 보복범죄 방지를 위하여 연방법무부에서 시작한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주로 조직범죄와 관련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특히 기소에 협력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었다[11]. 1984년에는 ‘포괄적 범죄규제법’(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에 ‘범죄피해자지원법’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을 정하여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증인 등에 대한 협박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12]. 특히 조직범죄에 의한 보복으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 요구되는 증인은 형사사법절차 기간과 그 외에도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3].

미국에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증인보호의 핵심은 경제적 원조, 증인과 피해자의 권리보장, 그리고 특별피해자보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증인보호와 관련 미국 형사절차의 특징을 정리하면[14]

첫째, 보호대상자의 이주와 신원, 직업,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운용이다.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인으로 증언을 할 수 있으며, 증인의 증언을 강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면책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 근거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증언의 대가로 증언과 관련된 증인의 범죄에 대한 소추를 면제하거나 증인 그 자체를 또는 증인으로부터의 파생 증거까지를 증인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15].

둘째, 연방헌법은 형사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증인 등에 대하여는 이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스콘신주와 같은 일부 주는 피해자와 증인에게 피고인과 같이 신속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연방과 대부분의 주에서는 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요소에 대해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인의 매수, 증인에 대한 협박, 사법방해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의 주된 입법목적도 보호대상 등의 확대에 있다. 이러한 위해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은 증인과의 대화 및 접촉금지 등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경호의 제공 등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라웨이주 등에서는 증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자,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 자, 범죄신고자, 소환장을 받은 자 등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다[16].

셋째, 증인보호와 함께 ‘형사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적인 조언이나 후원을 하는 입법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의 주에서는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자문관을 임명하여, 형사사법절차 및 피해자와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피해자권리장전’의 이행여부의 감독책임자로 주검찰관을 임명하며, 검찰관은 피해자에게 법제도 하에서 그들의 권리를 통

지하고, 피해자 등을 협박으로부터 보호하며 경제구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군 단위별로 ‘증인자문관’을 임명하여, 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 출석 등을 지원하고, 소송지연 등 각종 사유를 증인, 피해자 등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뉴햄프셔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증인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감수하여야 할 부담을 보상하기 위하여, 증인의 증언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증언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출석하는 기간 동안 증인의 고용주가 증인에게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증인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임금을 일일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을 출석 일수만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2 독일

독일에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증인보호의 문제는 1980년대 이후 “범죄수익환수제도”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하여 형사소송법 및 각종 특별 형사입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범죄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피해자보호법(OpferSchG 1986), 조직범죄대책법(OrgKG 1992), 증인보호법(ZSchG, 1998), 증인보호조화법(ZSHG 2001)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있다[17].

또한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증인보호처분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청객 통제, 증인에 대한 접근 금지, 비밀호송에 의한 증인의 법정호송 등도 포함하고 있다[18]. 이후 1998년 증인보호법의 제정으로 독일 형사소송법에 증인신문과 관련된 규정에 변화가 있었다. 사법기관도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송기록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공개로 증인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 증인보호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9].

- (1) 아동증인, 보호가 요구되는 중범죄, 조직범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

는 경우 신문을 받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독일형사소송법은 1987년 개정을 통해 제406조f 제3항을 설치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피해자인 증인의 신문이 신문자의 재량으로 증인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석자는 법정에서의 증인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증인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와 형사절차상 가해질 수 있는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 (2) 형사소송법상 공판과정에서 비디오 기술을 공판 과정에 도입하여 조서화로 인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있다. 증인이 방청인 앞에서 신문을 받을 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고 피고인의 퇴정이나 신문의 비공개로도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증인의 법정 외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증인이나 성추행을 당한 범죄 피해자인 증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디오 등 증거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은 법원에 의한 그리고 검사에 의한 신문뿐 아니라 경찰에 의한 신문에서도 적용되고, 또한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증인이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에 머무는 경우 내지 국내에 머무르거나 증언으로 인해 생명 등에 불이익이 생길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도 신문이 가능하다.
- (3) 독일에서는 일정한 약물범죄, 자금세탁죄, 테러단체의 조직죄, 기타 이와 관련범죄에 한정하여 공범증인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01년에 제정한 증인보호조화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임시위장신문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증인보호조화법은 증인 당사자 및 증인보호기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증인보호에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20].

## 2. 한국

### 2.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조는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 신고를 유도하고 보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이다[21] 또한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보복범죄에 대한 처벌의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다[22]. 한편 “국가는 범죄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23]고 하여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24]고 하여 보복범죄 가해자의 방어권,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리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 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25]고 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 신고자 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26]라는 규정 또한 해석하기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첫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둘째,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을 통하여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같은 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제1항에서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27]. 또한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8]고 하고, “제2항의 죄 가운데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9]고 하였으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고 하였다. 그러나 법 규정이 엄격하다 하여도 "가벼운 처벌"로 기능한다면 억제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 1.3 형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실태와 사례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자유형선고 비율이 비교적 낮고 불기소 처분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처벌의 결과는 보복범죄를 통제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 V. 결론

얼마 전까지도 가까운 일본에서조차 증인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인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31]. 그러나 최근에는 증인에 대한 보복 등으로 증인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32].

보복범죄에 대응한 현행법상 제도들은 보호범위의 협소성, 보호조치의 구체성 결여, 사법적 개입의 사후적 성격과 그에 따른 한계,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부재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보복행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지니고 있는 사후적 성격은 현행 신변보호제도의 본질적 한계라 볼 수 있다[33].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된 미국과 독일의 관련 법제를 참고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법제가 운용중이다. 그렇지만 보복범죄가

지나치게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강력한 처벌보다는 증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인데,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기능하여 보복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강력한 법집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보복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396건 중 보복협박이 13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범죄) 위반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건은 총 1,146건으로 2004년 67건에서 2013년 233건으로 9년 만에 3.5배가 증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절반(483명) 정도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4]. 이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보복범죄로 형사입건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형법」 등에 기초하여 구형을 받는다 하여도 현행 구제절차, 구제제도 또한 다양하다. 이와 같은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보복범죄의 가해자들이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한 유형의 보복범죄에 대하여는 형의 면제나 감경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익명증언·가명조사·신원관리카드 작성 등

대법원은 형사재판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 지원실'을 설치하고 관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재판 증인이 실제적 진실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특별히 보호를 받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고 대기할 장소도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35]. 또한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증인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익명(匿名) 증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첩 혐의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북한에 거주하는 증인의

가족들이 위협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비공개 재판이라 할지라도 재판과정에서 증인선서나 공판기록을 통해 증인의 신분이 피고인과 그의 변호사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36]. 그러므로 “익명증언제도”의 도입을 구체화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37]. 여기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와 진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인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명을 사용해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가명조서 대상을 확대 하였다. 그러나 전국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90%이상을 경찰이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현실에 비추어 사법경찰관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한 경우, 그 사유를 신속하게 검사에게 보고하여 수사지휘 단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도 가명조서를 작성한 사건은 인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유출을 최소화 하고, 실제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할 검사의 자격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경우 그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열람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경우는, 검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찰 내에 피해자지원담당관과 법정 동행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과의 분리신문, 공개법정 외에서의 증인신문 등을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재판단계에서도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검찰의 활동은 한 걸음 발전한 보복범죄 대응 대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대로 기능하여야 한다[38].

### 3. 수사관의 인식과 사전개입

범죄수사는 상대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며 보통 상대적이다. 속칭 “묻지마범죄”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된다. 범인을 검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살피다

보면 어떤 특징이 발견될 것이다. 범인검거와 관련된 사건의 단서는 물론이고 가해자 피해자와의 관계, 목격자 등의 진술, 피해품의 정도, 범행현장,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다 보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노출된 상황과 가해자 피해자 등의 진술, 가해자 피해자 등의 언행과 태도를 종합한다면 향후 범죄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자기가 담당 사건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내용을 알게 된다. 수사관이 판단을 하여 제2의 범행, 보복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 보호조치와 경고를 병행하여야 한다. 특히 보복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물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사전적 개입을 구체화하거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Phyllis B. Gerstenfeld, "Hate Crimes: Causes, Controls and Controversies," SAGE Publications, NY, p.95, 2013.
- [2] 오운성,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박영사, p.113, 2013.
- [3] 조상현, 김양현,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p.84, 2014.
- [4] 차훈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이론적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p.242, 2014.
- [5] K. Hanrahan and J. J. Gibbs, "Fear of Crime: its meaning in the lives of elderly women," in 「Victimizing Vulnerable Group : image of uniquely high-risk crime target」, edited by C. T. M. Coston, Westport, CT : Praeger. p.84.
- [6] <http://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67839>
- [7] 장규원,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p.1126, 2009,
- [8] 최인섭, 이순래, 조근석, "범죄피해자 실태 조사연



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51-52, 2006.

[9] <http://www.newstomato>

[10] 강맹진, "보복범죄 사례 연구", 2014, 11. 한국콘텐츠학회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 내용.

[11] 김상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제도*,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7-43, 2008.

[12] 장규원,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77호, 봄호), p.1127, 2009.

[13] 조병인, 신의기, 김광준, 강석구, 윤해성, 최응렬, 허경미, 송봉규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215-227, 2007.

[14] 정진수,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2, 1996.

[15] 최병각, "조직범죄수사의 협조자에 대한 양형과 형사면책",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6] M. B. Norman, "The Bomber Strikes Again: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Violates the First Amendment or Conflicts with the Copyright Act of 1976,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Law Center, Vol.81, No.6, pp.1281-1340, 2008.

[17] 박광민, 강석구, 이성대, *범죄피해자·증인 변호보호제도의 강화방안 (대검찰청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한국피해자학회, pp.73-75, 2008.

[18] 장규원,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p.1131, 2009.

[19] 백기봉,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3, 2008.

[20] 장규원,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p.1132, 2009.

[21]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조

[22]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3조

[23]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4조 제1항

[24]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4조 제2항

[25]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 제1항

[26]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1항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2항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3항

[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4항

[31] 宮澤浩一·國松孝次, *犯罪被害者對策の現状*, 東京法令出版, p.284, 2000.

[32] 박광민, 강석구, 이성대, 앞의 보고서, 2008; 송기오, 강경래, 앞의 보고서, p.24, 2006.

[33] 이성대, "보복범죄방지를 위한 사전적 개입 방안",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1호, pp.115-119, 2014.

[34] <http://www.upkorea.net/news>

[35] 연합뉴스, 2014-02-05, zoo@yna.co.kr

[36] <http://www.kgnews.co.kr/new>, 2014년 4월 6일.

[37] 대검찰청, *범죄신고자보호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3, 2012.

[38] 강맹진, "보복범죄 사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추계학술대회 구두발표 내용, 2014(11).

저 자 소 개

강 맹 진(Maeng-Jin Kang)

중심회원



- 2001년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법학박사
- 현재 :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범죄수사, 범죄예방, 항공테러예방, 공항보안